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4. 22.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5. 4. 22.
- 다. 상 정 일 자 : 2005. 4. 25.(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 1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봉투사용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사업장 변경(안 제2조제2호)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삭제(안 제4조제1항)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안 제5조)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종류 지정(안 제9조제1항)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를 규격봉투 판매로 하던 것을 전표 및 납부필증 판매로 변경 및 삭제(안 제11조제1항, 제3항 변경, 제11조제2항 삭제)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 신설(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제정건은 2005.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거체계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전환 함으로써 그동안 전용봉투에 이물질 과다 혼합반입으로 인한 기계의 잦은 고장과 이로 인한 비용상승·악취와 도시미관저해,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악순환과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의 변경에 따른 전용용기 종류지정,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삭제 등 배출관련 운영개선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등 수수료 과징절차와 체계, 준용규정신설 등은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특히 환경부 제2차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부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세부계획 등에 관련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점을 감안 한다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